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62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안상훈·성일종·고동진
박성훈·김소희·임이자
김은혜·박덕흠·인요한
주호영·정연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체계로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4조,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5조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를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로, “한다”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통합·해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운영·관리

6.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의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임원의 후보자”를 “임원(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호 중 “관리 및 평가”를 “관리·평가 및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급계획 및”을 “수급계획,”으로, “개발”을 “개발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통계 구축”으로 한다.

제5장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비밀 유지의 의무) 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를 제46조로 하고, 제6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벌칙)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법률 제20818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u> <u>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사회서비스</u> <u>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u> <u>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u> <u>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 전</u> <u>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u> <u>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u> <u>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u> <u>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u> <u>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u> <u>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서비스의 공공성 · 전문성</u> <u>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u> <u>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u> <u>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u> <u>노력하여야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u>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u> <u>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u>	<u>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u> <u>법률</u> 제1조(목적) ----- <u>사회서비스</u> <u>원-----</u> ----- ----- ----- ----- ----- -----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u>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u> <u>공성 · 전문성 및 투명성(이하</u> <u>“공공성등”이라 한다)과 그 질</u> <u>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u> <u>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u> <u>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

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
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
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
항

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
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삭 제>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
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
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
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
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 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 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통합·해산하려

<삭 제>

제9조(시·도 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 5. (생략)

<신설>

6. ~ 10. (생략)

② (생략)

<신설>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통합·해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
-----.

1.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운영·관리

2. ~ 5. (현행과 같음)

6.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의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 (생략)
3.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조사·개발

4. ~ 9. (생략)

<신설>

<신설>

제45조(과태료)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
-----.

1. -----
-----관리·평가 및 교육-----

2. (현행과 같음)
3. -----수급계획,-----

-----개발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통계 구축

4. ~ 9.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비밀 유지의 의무) 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벌칙)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과태료) (현행 제45조와

같음)
